

# 남양주 자원순환종합단지 민간투자사업 동의안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725 |
|----------|-----|

제출년월일 2022. 4. 13.  
제출자 남양주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3기 신도시(왕숙1,2지구 및 양정역세권)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우리시 계획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2025년 수도권매립지 반입중단 및 2026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,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을 통한 생활폐기물 처리 자주권을 확보하고자 하며,
- 왕숙2지구와 연접하고 있는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의 노후화로 도시미관 저해 및 악취와 해충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바, 왕숙2지구 입주 전 시설 현대화(지하화) 필요성이 대두됨.
-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(PIMAC)에서 본사업의 타당성과 적격성이 확보되었음을 2022.04.05. 통보함에 따라, 적기 준공을 위해 「남양주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」에 의거 사업추진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금회 안건으로 상정함.
- 의회 동의 후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하여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며,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현대화된 폐기물처리시설이 적기 준공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임.

## 2. 근거법령

-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4조(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) 1호 BTO-a(Build-Transfer-Operate-adjusted)방식

-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9조(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)
- 「남양주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」 제12조(의회의 동의 등)

### 3. 사업추진 방식

-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 방식(BTO-a)
  - 민간사업자가 자본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물을 설치 후 준공과 동시에 해당시설의 소유권이 우리시에 귀속되고,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이며, 운영기간 중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을 우리시와 민간사업자가 분담하는 방식.

### 4. 주요내용

#### ■ 일반현황

- 위 치 : 경기도 남양주시 경강로 163번길 44일원
- 시설용량 :
  -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: 250톤/일
  - 재활용품선별시설 : 110톤/일
  - 대형폐기물처리시설 : 130톤/일
  - 하수슬러지연료화시설 : 290톤/일

#### ■ 제안사업 개요

- 총사업비 : 236,179백만원
- 추진방식 : BTO-a(Build-Transfer-Operate-adjusted)
- 공사기간 : 착공일로부터 40개월
- 운영기간 : 준공후 20년
- 제 안 사 : (가칭)남양주환경에너지(주) [주간사 : 코오롱글로벌(주)]

## ○ 조감도



## 5. 추진실적

- 2020. 07. :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제출(제안자→시)
- 2020. 07. : 제안서 적격성 검토 의뢰(시→공공투자관리센터(PIMAC))
- 2021. 04. :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(한강유역환경청)
- 2021. 04. : 기존시설 기술진단 완료(한국환경공단, 폐쇄 후 신설)
- 2021. 08. :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승인(기획재정부)
- 2022. 04. : 제안서 적격성 검토 결과 통보(공공투자관리센터(PIMAC)→시)
  -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 결과, 타당성 및 적격성 확보

## 6. 추진계획

- 2022. 05. :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(기재부)
- 2022. 06. : 제3자 제안공고
- 2022. 09. :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
- 2022. 12. : 실시협약 체결,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설계 착수
- 2023. 01. : 공사착수(공사기간 40개월)
- 2026. 04. : 공사 준공 및 운영 개시

## 7. 기대효과

- 급격한 인구증가에 대비한 생활폐기물처리 기반시설 확충
- 구리시, 수도권매립지 및 민간업체 등 폐기물처리 외부의존에 따른 도시 운영 리스크 해소
-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및 지하화에 따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
- 민간 인프라 및 자본을 활용하여 우리시 재정부담 완화 및 책임 운영 실시
- 운영 시 지역주민 우선 채용으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

## 8. 타당성 및 적격성 검토결과(공공투자관리센터, PIMAC)

- 시설용량 : 상위계획 시설용량에 부합한 추진대안 제시
  -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: 250톤/일
  - 재활용선별시설 : 110톤/일
  - 대형폐기물처리시설 : 130톤/일
  - 하수슬러지처리시설 : 290톤/일

※ PIMAC 검토 시설용량

- 남양주시 예상인구 : 2035년 기준 76만명
- 76만명 대비 적정용량 :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190톤/일, 재활용선별시설 95톤/일, 대형폐기물처리시설 90톤/일, 하수슬러지처리시설 : 205톤/일

- 타당성 검토결과
  - 본 사업은 21-2차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으로 결정된 바, 사업수행 타당성 기 확보

○ 적격성 검토결과 (VFM > 0일 경우 적격성 확보)

- VFM은 9,563백만원(비율 2.33%)으로, VFM이 확보되는 것으로 분석됨.

\* VFM(Value for Money)이란? : 재정사업 대비 민자사업의 비용 절감액을 나타내는 지표로, “0” 이상일 경우 민자사업의 적격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판단.

- 민간이 정부보다 서비스질 향상 효과, 산업 파급 효과 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,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정부위험의 많은 부분이 민간으로 위임될 것으로 예측됨.

○ 제3자 제안공고 시 최초제안자 우대점수 비율

- 제안서 검토 결과를 기반으로 공공투자관리센터(PIMAC) 우대점수심의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1~2% 범위 내에서 우대점수 부여

## 9. 위원회 심사 및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(예정)

○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

- 기획재정부 주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사업(총사업비 2,000억원 이상)으로, 시의회 동의 후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심의 상정할 예정임.

- 향후 실시협약 체결 및 변경 시 주요내용에 대하여 우리시 조례에 따라 시의회 보고 후 추진

○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

- 시의회 동의안 의결 후 제3자 제안공고안을 작성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(PIMAC)에 검토를 의뢰할 계획임.

- 기획재정부 주관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제3자 제안공고안을 심의하여 확정하여 공고 예정임.

- 제3자 제안공고 시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이 수립·고시된 것으로 봄.(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99조 제5항)

## 10. 연도별 민간부분 지급내역(예정)

- 운영기간 동안 폐기물처리에 따른 톤당 처리비용(사용료)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할 계획이며, 제3자 제안공고 및 협상 등 향후 행정절차 단계에서 인근 시군이나 유사시설 대비 저렴한 사용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,
- 「남양주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」 제13조에 따라 시의회(상임위원회) 의견을 사전 청취한 후 최초 사용료를 결정할 계획임.

# 참 고 사 항

□ 상위계획 부합여부 (붙임 1)

□ 관련법령 검토 (붙임 2)

○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

○ 남양주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

# 붙임1 상위계획 부합여부

## 1. 경기도 제1차 자원순환시행계획

| 구분       | 사업기간      | 규모(톤/일) | 비고 |
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|
| 음식물류폐기물  | 2021~2028 | 250     |    |
| 재활용품선별시설 |           | 110     |    |
| 폐기물적환시설  |           | 130     |    |

## 2. 남양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(부분변경)(2021.08)

〈표 II-22〉 하수찌꺼기 최종처리방안

(단위:톤/일)

| 처리시설명           | 2020년    | 2025년    | 2030년    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|
| 하수찌꺼기 발생량       | 202.9    | 290.1    | 379.1     |    |
| 광역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처리 | 154.0    | -        | -         |    |
| 자체처리시설 처리       | -        | 246.0    | 246.0     |    |
| 부족량             | (-) 48.9 | (-) 44.1 | (-) 133.1 |    |

주 1) 광역 하수슬러지 3단계 시설계획은 2020년부터 적용

주 2) 광역슬러지 1단계시설( '09년) 2022년 사용종료(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 폐자원 시설부-40, 2021.1.11.)

주 3) 광역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협약물량은 2025년 하수찌꺼기 실제 발생량을 고려 하여 타 지자체 매각이나 유지

주 4) 자원순환종합단지 운영개시 이전까지는 수도권 매립지 협약물량 유지

〈표 II-23〉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계획

| 구분   | 당초  | 변경   | 비고 |
|------|---|--|----|
| 처리방법 | 전량 광역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처리(154톤/일)<br>부족량 : 추후변경시 재수립 | 자원순환종합단지(안) 처리(246톤/일)<br>부족량 : 추후 변경시 재수립(133.1톤/일) |    |

주 )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완공 전까지 광역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및 외부위탁처리, 추후 변경전까지 부족량은 전량 위탁처리

### 1.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

#### 제4조(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)

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
1.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,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(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

#### 제9조(민간부문의 사업제안)

- ① 민간부문은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.

### 2. 남양주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

#### 제12조(의회의 동의 등)

-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민간제안부문의 사업제안에 의하여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전에 법 제10조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고시전에 각각 남양주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④ 시장은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이 제3의 제안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